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31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 백선희·이학영·이소영

윤준병 • 신영대 • 박용갑

위성곤 • 황운하 • 유종군

권향엽・김 윤・서왕진

한병도 • 박홍근 • 한창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 한 실정임.

이에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신설).

법률 제 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교직원에 대한 긴급 조치) ①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학생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17조의2(교직원에 대한 긴급 조치) ①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학생의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지 체 없이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 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